

2007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의안	
번호	

제출년월일 : 2006. 11.

제출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「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」에 의거 작성한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임.

2. 주요골자

2007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

취득이 총 9건으로 61,107㎡ 9,519,121천원이고

처분이 총 2건으로 31,947㎡ 66,797천원인 바 그 상세내역은

가. 토지 매입, 건물 신축 등 취득은

□ 토지 매입이 2건에 12필지 47,672㎡ 165,103천원이고

○ 미탄 마하생태관광지 조성 부지, 마하리 81번지의 1필 4,879㎡

(문화관광과)

○ 용평 체육공원 조성 부지, 장평리 산266번지 외 9필 42,793㎡

(스포츠사업단)

□ 건물 신축이 5건에 5동 9,340,000천원임

○ 평창읍 문화복지센터 신축 1동 7,000,000천원(환경복지과)

○ 방림면 복지회관 신축 1동 700,000천원(환경복지과)

○ 도암면 보건지소 신축 1동 640,000천원(보건의료원)

○ 분회경로당 신축 2동 1,000,000천원(환경복지과)

나. 토지 교환 취득 · 처분은

□ 총 2건으로 취득이 2필 9,179㎡이고, 처분이 6필 31,947㎡임.

- 대화 위생매립장 진·출입로 확보를 위해, 대화리 산233번지 13,587㎡를 처분하고, 동리 734-8번지 1,179㎡를 취득하는 것임.(환경복지과)
-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, 종부리 9-3번지 외 4필 18,360㎡를 처분하고, 동리 산85-5번지 8,000㎡를 취득하는 것임.(스포츠사업단)

3. 관계 법령

가.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

나.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

200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

(단위: m²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의 표 시			추정가액 (공시지가)	취득 시기	취득사유	소유자
	지목	소재지	수량				
합 계			61,107	9,519,121			
토지 매입			47,672	165,103			
1	소계		4,879	77,614	상반기	마하생태관광지 조성 부지	
	전	마하리 81	2,770	41,550			김종국
	전	마하리 82	2,109	36,064			이영균
2	소 계		42,793	87,489	상반기	용평체육공원 조성 부지	
	임	장평리 산266	9,000	4,968			함동우
	임	장평리 650-2	3,279	3,574			정봉주
	임	장평리 649	6,139	6,507			김종욱
	전	장평리 646	2,314	13,329			김흥기
	전	장평리 650	793	4,568			국(건교부)
	전	장평리 651	605	3,485			강홍석
	임	장평리 650-1	6,998	7,488			
	임	장평리 650-4	4,000	4,280			
	구거	장평리 687-3	7,000	23,940			
전	장평리 645	2,665	15,350				
토지 교환			9,179	14,018			
1	전	대화리 734-8	1,179	7,970	상반기	대화위생매립장 진출입로 부지	최돈길
2	목장용지	종부리 산85-5	8,000	6,048	상반기	평창종합스포츠타운 확보 부지	이두진
건축물 신증축			4,256	9,340,000			
1	철콘	하리 113-1	2970	7,000,000	하반기	문화복지센터 신축	
2	철콘	횡계리 342-19	430	640,000	하반기	도암보건지소 신축	
3	철콘	방림리 1271-2	460	700,000	하반기	방림복지회관 신축	
4	철콘	횡계리 342-19	198	500,000	하반기	분회경로당 신축	
5	철콘	하진부리 252	198	500,000	하반기	분회경로당 신축	

2007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

(단위: m², 천원)

일련 번호	재산의표시			처분 수량	추 정 가 액 (공시지가)	처 분 사 유	취득 희망자
	지목	소재지	지적				
교환 처분			31,947	31,947	66,797		
1	소 계		13,587	13,587	4,008	대화위생매립장 진출입로 부지	최돈길
	임	대화리 산233	13,587	13,587	4,008		
2	소 계		18,360	18,360	62,789	평창 종합스포츠타운 확보 부지	이두진
	전	종부리 9-3	3,117	3,117	10,660		
	전	종부리 9-4	5,335	5,335	18,245		
	전	종부리 9-5	3,868	3,868	13,228		
	전	종부리 9-6	3,947	3,947	13,498		
	전	종부리 9-7	2,093	2,093	7,158		

附 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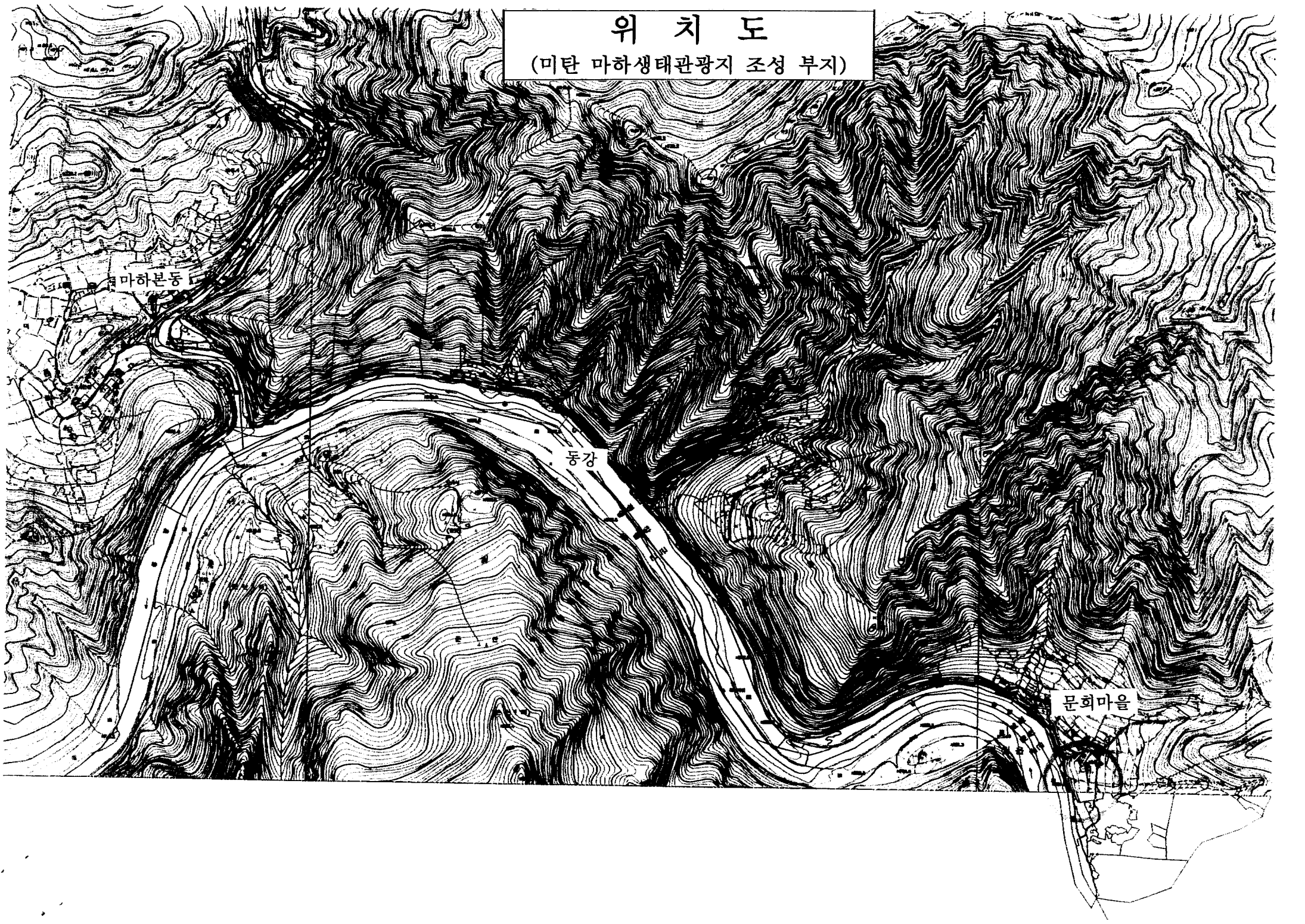
- 지 적 도
- 토지대장열람조서
- 사업계획서

목 차

차 례	재산의 표시	사 업 명	페이지
1	미탄면 마하리 81번지 외	미탄 마하생태관광지 조성 부지	1~5
2	용평면 장평리 산266번지 외	용평체육공원 조성 부지	6~10
3	대화면 대화리 734-8번지 외	대화위생매립장 진출입로 확보 부지	11~16
4	평창읍 종부리 산85-5번지	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교환 부지	17~24
5	평창읍 하리 113-1번지	평창문화복지센터 신축	25~31
6	도암면 횡계리 342-19번지	도암보건지소 신축	32~38
7	방림면 방림리 1271-2번지	방림복지회관 신축	39~40
8	도암면 횡계리 342-19번지 외	(도암,진부)분회경로당 신축	41~47

위 치 도

(미탄 마하생태관광지 조성 부지)



미탄면 마하생태관광지 조성 부지
(마하리 81번지 외 1필 4,879㎡)



토지대장열람조서

<미탄마하생태관광지 조성 부지>

재산의 표시				소유자		비고
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m ²)	성명	주소	
소 계	2필		4,879			
마하리	81	전	2,770	김종국의2	미탄면 마하리 67	
마하리	82	전	2,109	이영균	미탄면 마하리 435	

위와 같이 토지대장을 열람한 바,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.

2006. 10. 30.

재무과 지방지적주사 김택용 (인)

등록번호	문화관광과-104 79
등록일자	
결재일자	
공개구분	공개

지방행정주사보	관광담당	문화관광과장	부군수	군수
				10/20
신항목이 정 위 김 일 래 가 유 천 권 리 승				
협조자				

2007 당초예산 신청사업

2007년도 관광개발사업 추진계획

마하 생태관광지 조성 부지매입 계획

백룡동굴 개방과 주변지역의 민물고기 생태관 및 생태주택관 신축 등 향후 동강을 비경으로 한 마하 생태관광지 조성 등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 등 관광지 조성에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함임.

□ 사업개요

- 위 치 : 미탄면 마하리 81번지 외 1필지
- 사업기간 : 2006.1.1~2006.12.31
- 매입면적 : 4,879㎡(1,476평)
- 사 업 비 : 400백만원(군비) ※ 2007년도 당초예산 반영 요구

□ 세부계획

○ 매입토지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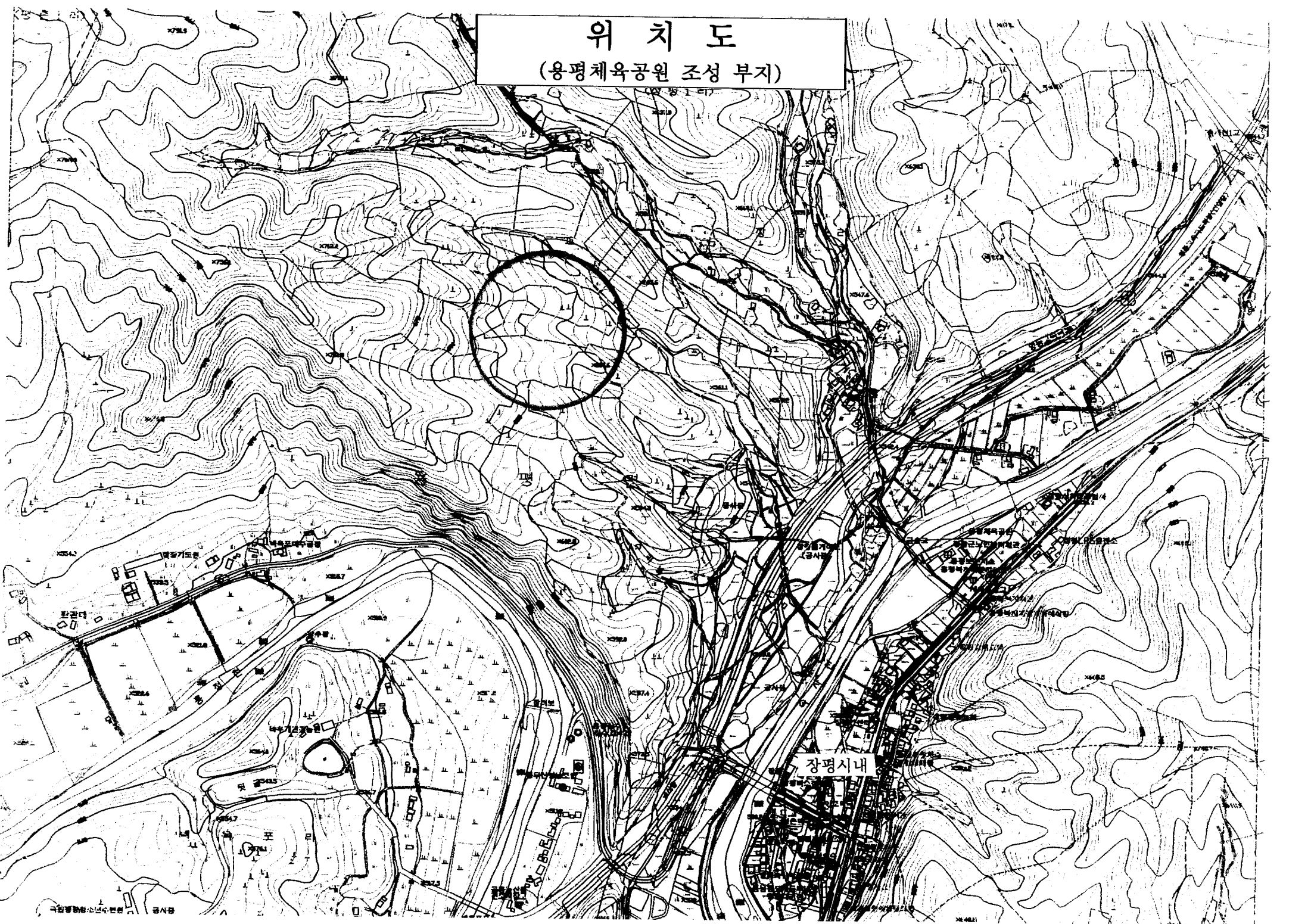
- 위 치 : 미탄면 마하리 81,82번지
- 토지소유자
 - 이영균(강릉시) : 1필지(전) 2,109㎡(638평)
 - 김종국(영월군) : 1필지(전) 2,770㎡(838평), 문중토지

○ 매입 후 사용계획

- 백운산 생태 탐방로 주차장 및 백룡동굴 전시관 등 관광 편의시설 조성.

위치도

(용평체육공원 조성 부지)



649호

용평체육공원 조성 부지
 (장평리 산266 외 10 42,793㎡)

산 231호

산 250호

산 251호

산 237호

산 238호

산 243호

산 244호

산 252호

산 236호

산 239호

산 246호

647호

산 252-1호

산 252-2호

산 242호

640

산 245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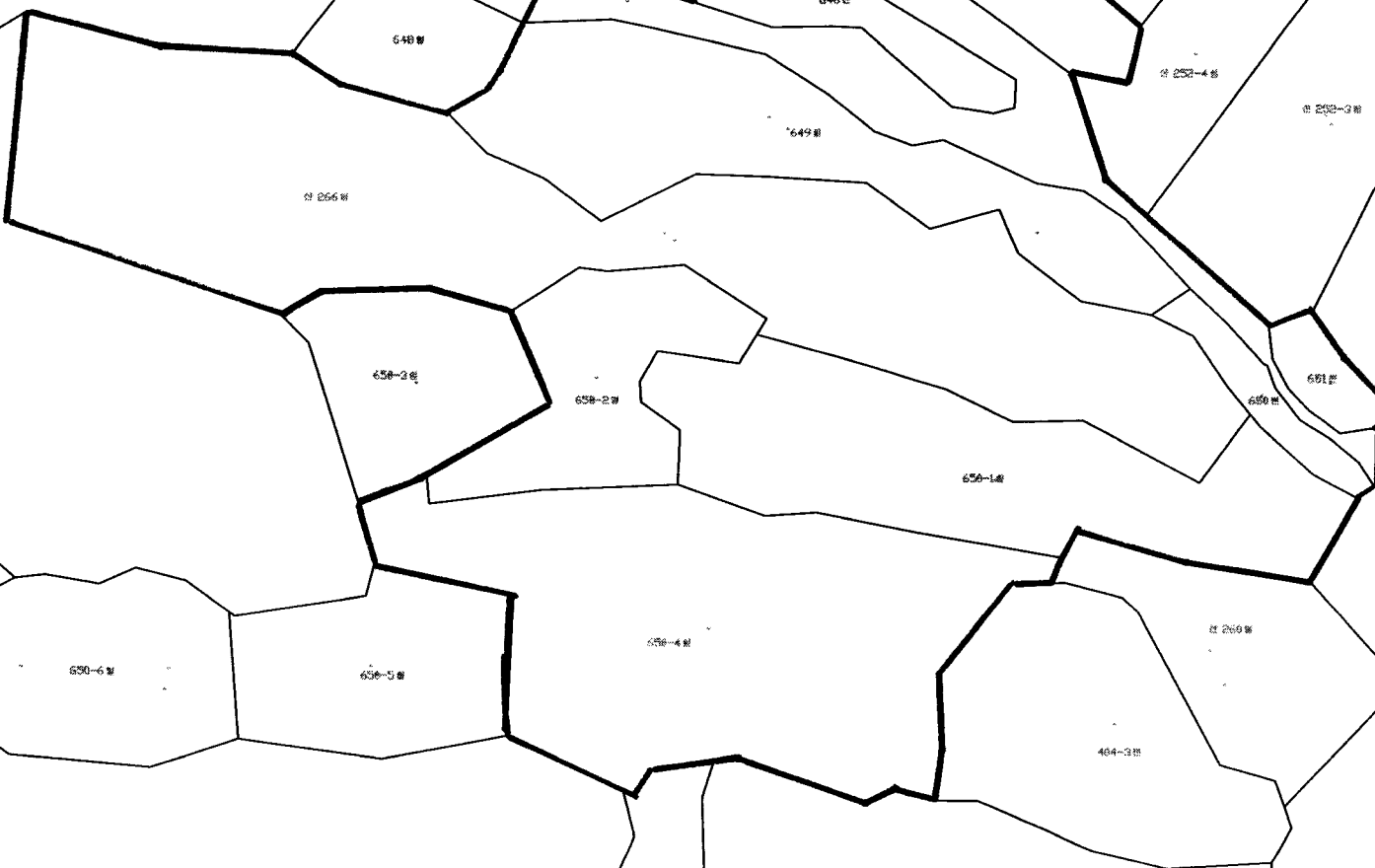
648호

646호

산 252-4호

644호

643호



산 266호

650-2호

650-2호

651호

693-2호

652-1호

산 273호

산 257호

650-6호

650-7호

650-4호

산 269호

산 250호

652호

604-3호

토지대장열람조서

<용평체육공원 조성 부지>

재산의 표시				소유자		비고
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m ²)	성명	주소	
소 계	10필		42,793			
장평리	산266	임야	9,000	함동우	울산시 중구 유곡동 113-9	
	650-2	임야	3,279			
	649	임야	6,139	정봉주	용평면 장평리 330	
	646	전	2,314			
	650	전	793	김종욱	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119-159	
	651	전	605			
	650-1	임야	6,998	김흥기	용평면 장평리 335	
	650-4	임야	4,000			
	687-3	구거	7,000	국(건교부)		
	645	전	2,665	강홍석	동해시 망상동 45	

위와 같이 토지대장을 열람한 바,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.

2006. 10. 30.

재무과 지방지적주사 김택용 (인)



등록번호	스포츠사업단-
등록일자	
결재일자	
공개구분	공개

스포츠산업 담당	스포츠사업 단장	부군수	군수	
최관성	이영수	김영환	이영수	
협조자	기획감사실장 김영환 예산담당 이영수			

'07년도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를 위한

사업계획 보고서

스포츠사업단
(스포츠산업팀)

용평체육공원 부지매입

□ 필요성

- 각종 면단위 행사가 개최되던 장평운동장(구 전경대부지)이 속사천 제방 부지에 포함될 계획이므로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써 우선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함.

□ 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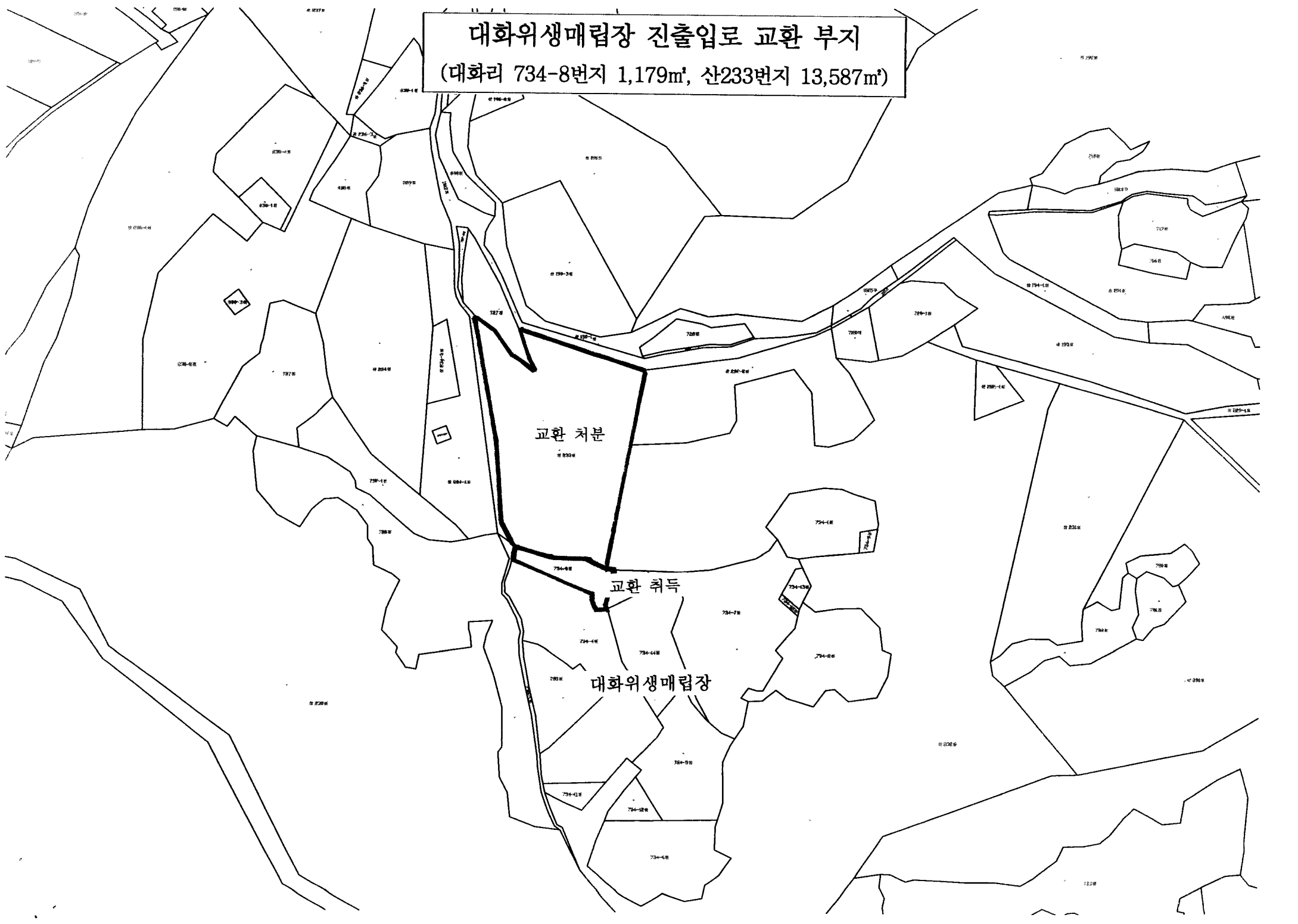
- 위 치 :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산 266번지의 9필지
- 사업기간 : 2007. 3월 ~ 12월
- 사업내용 : 용평체육공원 부지매입 12,940평
 - ※ 읍면구상 : 운동장(본부석, 육상트랙), 테니스장, 족구장, 기타 부대시설
- 투자계획 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	기투자	2007년예산	2008이후	비 고
계	1,000,000		1,000,000		
국 비					
도 비					
교 부 세					
군 비	1,000,000		1,000,000		

□ 2007년도 예산요구액 산출기초 및 내역

- 부지매입 12,940평 = 1,000,000천원(대략 평당 77천원 기준)

대화위생매립장 진출입로 교환 부지
(대화리 734-8번지 1,179㎡, 산233번지 13,587㎡)



토지대장열람조서

<대화위생매립장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교환 취득 및 처분 부지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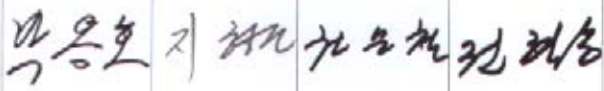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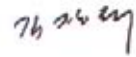

재산의 표시				소유자		비고
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m ²)	성명	주소	
소 계	2필		14,766			
대화리	734-8	전	1,179	최돈길	대화면 대화리 945	취득
대화리	산233	임야	13,587	평창군	평창읍 하리 210-2	처분

위와 같이 토지대장을 열람한 바,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.

2006. 10. 30.

재무과 지방지적주사 김택용 (인)

등록번호	환경복지과-182 49
등록일자	
결재일자	
공개구분	공개

환경센터담당	환경복지과장	부군수	군수	
			08/12	
				
협조자	산림정책담당(의견있음)			
	재무과장(의견있음)			
	재산관리담당(의견있음)			

대화위생매립장 부지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교환계획



환경복지과

대화위생매립장 부지확보를 위한 교환계획

❖ 대화위생매립장내 연결된 사유지와 균유림을 교환하여
진·출입로를 개설하고, 매립장 사용종료후 효율적인
토지활용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여 원활한 폐기물매립
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□ 대화위생매립장 현황

- 위 치 : 대화면 대화8리 734-1
- 면 적 : 16,900㎡
- 매립용량 : 133,500㎡
- 사용기간 : '00. 7. ~ '07. 12.

□ 교환부지

구 분	지 번	지 목	면적(㎡)	교환면적(㎡)	감정평가액
균유림	대화리 산233	임야	13,587	13,587	20,380,500원
사유지	대화리 734-8	전	1,179	1,179	21,811,500원

□ 교환부지 세부내용

구 분	소유자	현부지 이용상태	비 고
균유림	평창군	❖ 대화위생매립장과 연결된 임야로 대부분 소나무가 자생중임	별첨 사진
사유지	최돈길	❖ 대화위생매립장과 연결된 농지로 고추농사와 3개 분묘가 있음	별첨 사진

□ 토지감정 조서

구분	지번	지목	면적(m ²)	감정평가 단가	
				미래감정	제일감정
군유림	대화리 산233	임야	13,587	1,500원	1,500원
사유지	대화리 734-8	전	1,179	18,000원	19,000원

□ 추진사항 및 계획

- 공유재산 교환계획 협의 : 재무과, 산림과
- 토지감정평가(2개소) : 미래, 제일 감정평가법인
-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뢰(재무과) : 9. 30일한
- 의회 상정 및 의결 : 정기의회
- 교환총액에 대한 사후 정산 및 소유권이전 : 12. 31일한

□ 행정사항

- 교환차액에 대한 보상금 예산계상 : 1,431천원('07당초예산 확보)
- 관계법령 : 별첨

교환부지 사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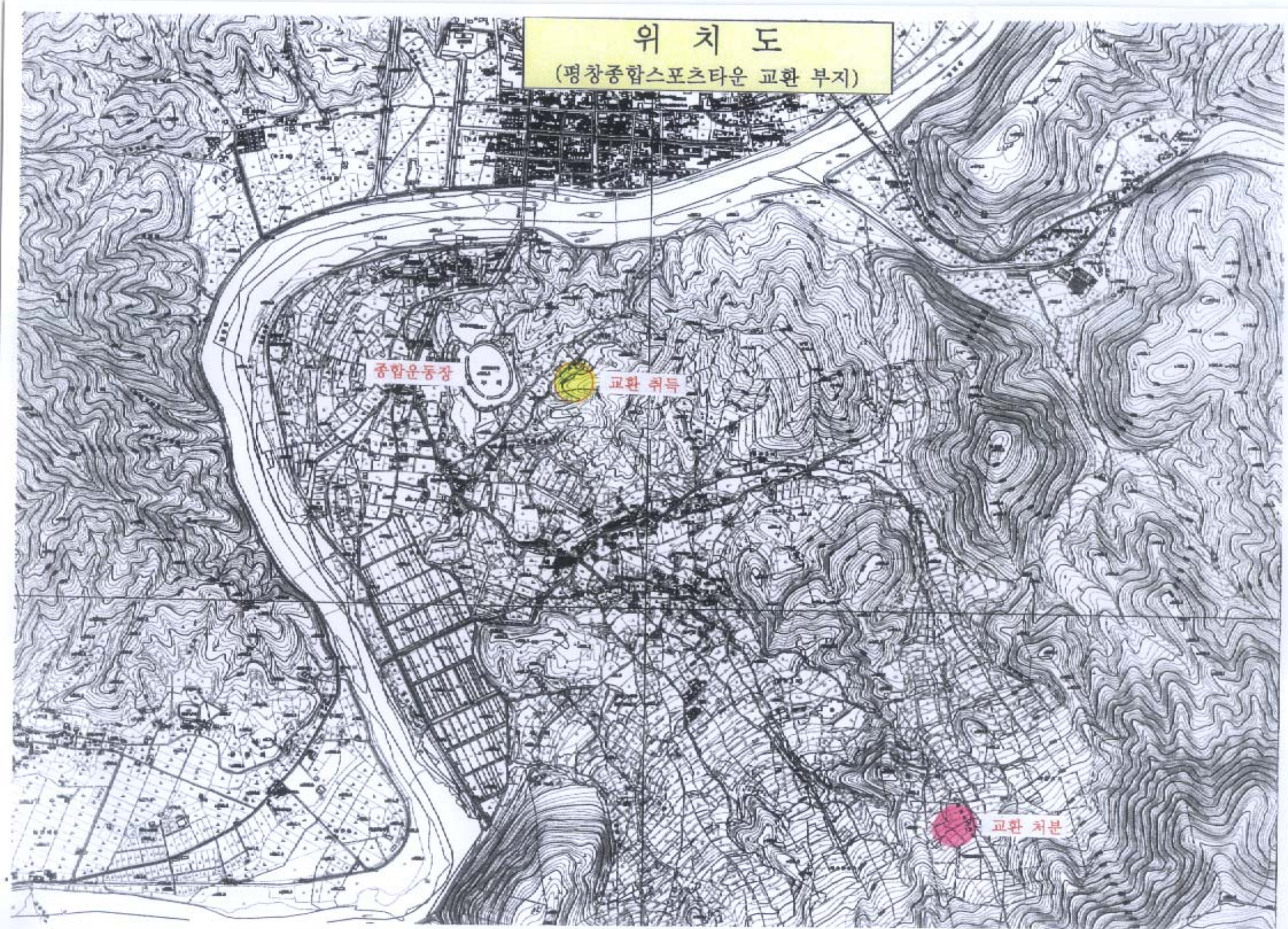
위치도

(평창종합스포츠타운 교환 부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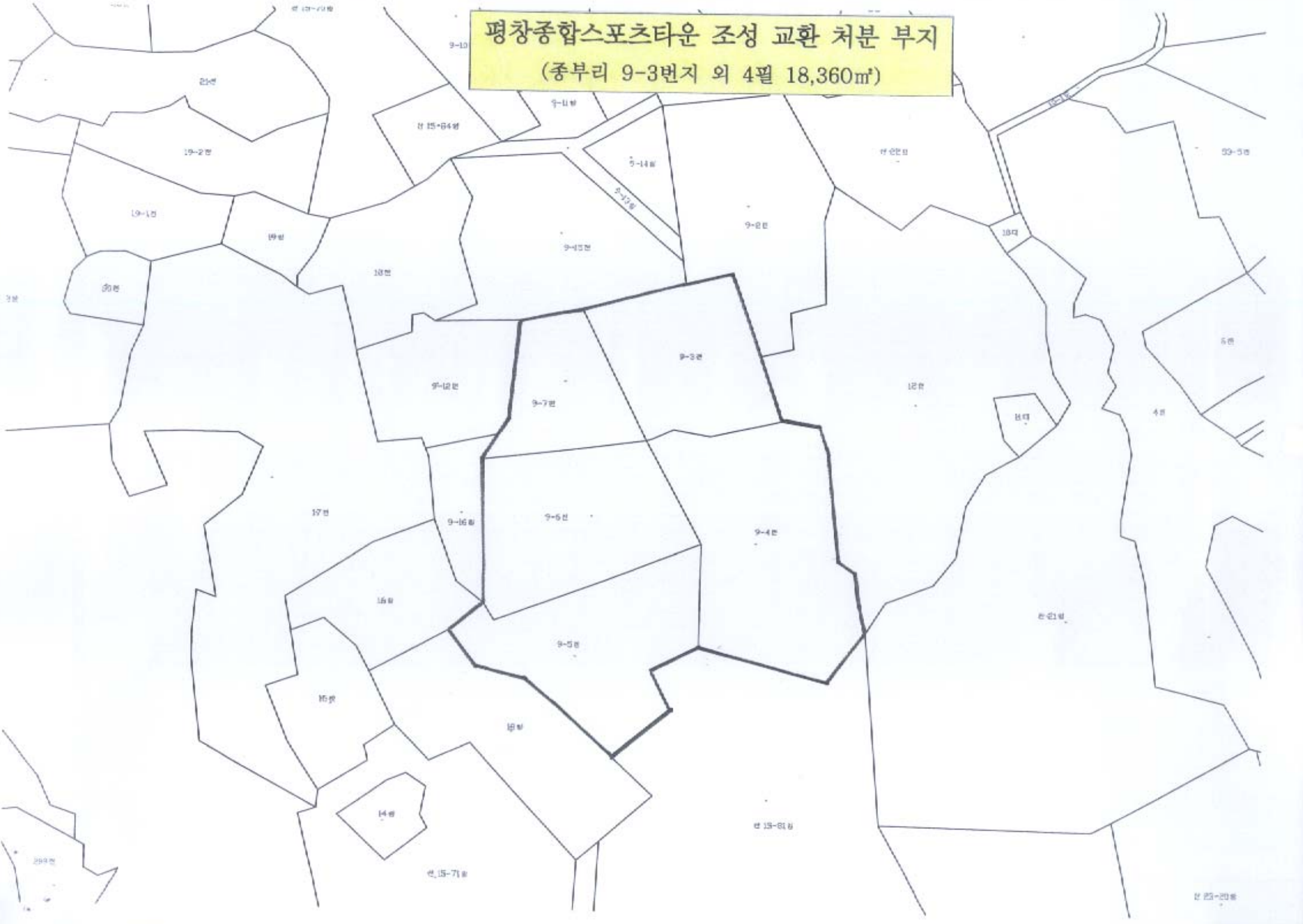
종합운동장

교환 부지

교환 처분



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교환 처분 부지
(중부리 9-3번지 외 4필 18,360㎡)



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교환 취득 부지
(종부리 산85-5번지 8,000m²)



토지대장열람조서

<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교환취득 및 처분 부지>

재산의 표시				소유자		비고
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m ²)	성명	주소	
처분	5필		18,360			
중부리	9-3	전	3,117	평창군	평창읍 하리 210-2	처분
	9-4	전	5,335			
	9-5	전	3,868			
	9-6	전	3,947			
	9-7	전	2,093			
취득	1필		8,000			
중부리	산85-5	임야	8,000	이두진	평창읍 중부리 23	취득

위와 같이 토지대장을 열람한 바,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.

2006. 10. 30.

재무과 지방지적주사 김택용 (인)

등록번호	스포츠사업단-2 356
등록일자	
결재일자	
공개구분	공개

스포츠사업단 당	스포츠사업단 장	부군수	군수	
			10/27	
최 찬성 이 영웅 김 오 현 권 리 승				
협조자	재무과장 재산관리담당		김 사 령 김 객 용	

「평창종합스포츠타운」 부지확보를 위한 교환계획

평 창 군
(스포츠사업단)

평창종합스포츠타운 부지확보를 위한 교환계획

종합스포츠타운 후보지에 대한 부지확보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으나, 이두진氏 소유의 종부리 85-5번지에 대하여 교환의사만 표시하고 있어 균유지와 교환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여 종합스포츠타운 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□ 교환부지

구 분	지 번	지 목	면적(m ²)	교환면적(m ²)	비 고
균유지	종부리 9-3	전	3,117	3,117	토지임야상태
	종부리 9-4	전	5,335	5,335	토지임야상태
	종부리 9-5	전	3,868	3,868	토지임야상태
	종부리 9-6	전	3,947	3,947	토지임야상태
	종부리 9-7	전	2,093	2,093	토지임야상태
계	5필지		18,360	18,360	
사유림	종부리 산85-5	목장 용지	8,000	8,000	순수임야

□ 교환방법

- 감정평가를 통해 대금 정산없이 이두진氏 토지의 감정가격에 맞춘 면적으로 균유지와 교환 실시

□ 교환부지 세부내용

구분	소유자	현부지 이용상태	비 고
군유지	평창군	▶삼방산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종부리9-3, 4, 5, 6, 7번지 공히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갈대숲이 있는 토임상태임. 지적도상 맹지이나, 현황상은 소형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음.	
사유림	이두진	▶종합운동장 인근 농경지와 접한 임야로서 지목은 목장용지이나, 사실상 소나무 및 활엽수가 자생중인 임야임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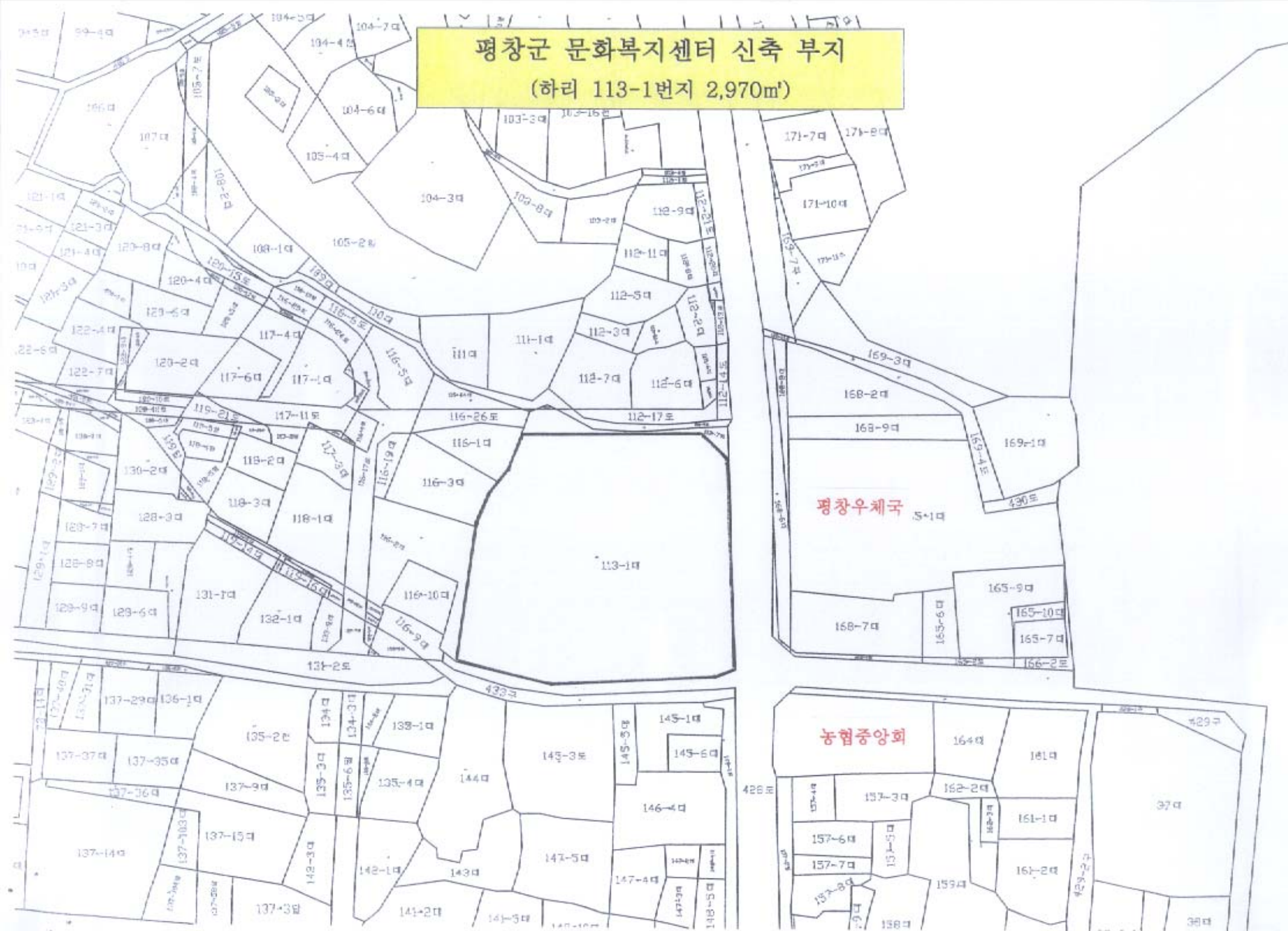
□ 향후계획

- 교환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후 즉시 감정을 실시하여 교환할 계획임.
- 필요시 분할측량 실시.

● 교환토지 위치사진 ●



평창군 문화복지센터 신축 부지
(하리 113-1번지 2,970m²)



토지대장열람조서

<평창문화복지센터 신축 부지>

재산의 표시				소유자		비고
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m ²)	성명	주소	
소 계	1필		2,970			
하리	113-1	대	2,970	평창군	평창읍 하리 210-2	

위와 같이 토지대장을 열람한 바,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.

2006. 10. 30.

재무과 지방지적주사 김택용 (인)

등록번호	사회복지팀-633 8
등록일자	
결재일자	
공개구분	공개

사회복지담당	사회복지팀장	환경보호과장	부군수	군수
				09/27
전	장호이상진	최해성	김희철	권희승
협조자	예산담당(의견있음) 관재담당 여성정책담당		김혁용 여정은	

평창군문화복지센터 건립 세부추진계획

환 경 복 지 과
(사회복지팀)

평창군 문화복지센터건립 추진계획

- 지역사회 문화·복지의 중심적 역할 수행 및 복합공간 마련을 위한 문화복지센터 건립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함.
 - 여성회관 + 종합사회복지관 + 청소년문화의집

□ 사업개요

- 위 치 : 평창군 평창읍 하리 113-1번지
- 사업량 : 연면적 4,242㎡(지하1층, 지상4층)
 - 종합사회복지관 + 여성회관 + 청소년수련시설
- 사업비 : 7,168백만원
- 사업기간 : 2006년 9월 ~ 2008년 6월

□ 사업타당성 검토

【용역개요】

- 용역기간 : '06. 2. 14 ~ 5. 14
- 용역업체 : (주)진화기술공사
- 타당성조사 내용
 - 현황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
 - 문화복지센터 건립의 필요성
 - 개발 기본구상 및 투자·사업수지 분석
 - 향후 관리운영계획 및 결론

【타당성검토 결과】

○ 주요시설의 입지타당성

- 여성회관 및 사회복지관

장 점	단 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평창군내 유사시설 없음 ○ 문화복지회관과 연계한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가능 ○ 평창읍의 중심성을 강화시켜 규모의 경제 실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공서비스 시설의 특정지역 집중으로 인한 지역간 형평성 문제 ○ 군 전체에서의 입지가 너무 남쪽으로 치우침
⇒ 공공서비스 시설들이 특정지역에 집중되는데 따른 원거리 지역 주민들의 불만해소를 위한 형평성 있는 효율적 운영 필요	
⇒ 평창군민에게 필요한 시설이며 현재의 계획부지에 입지가 타당	

- 청소년 수련시설

청소년 수련관	청소년 문화의집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다양한 수련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○ 규모 : 최소 1,500m² 이상 ○ 시설기준 : 실내집회장, 체육활동장 등 11개시설 ○ 청소년지도사 배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급 1인, 2급 1인, 3급 2인 ○ 복합시설로 설치할 경우 별도의 출입문 등 설치 필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간단한 수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학급단위 수련시설 ○ 규모 : 최소제한 규정없음 ○ 시설기준 : 실내집회장, 휴게시설 등 5개시설 ○ 청소년지도사 배치 : 급수 제한없이 1인
⇒ 대상 부지의 규모, 현재 군내 청소년계층의 인구 등을 감안했을 때, 청소년 수련관의 입지보다는 간단한 수련을 실시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입지가 타당함.	

○ 시설규모 산정

- 여성회관:1,630m², 사회복지관:2,165m², 청소년문화의집:447m²
- 규모산정 방법
 - 전국 시설별 연면적 확인
 - 시·군별 해당인구 1인당 면적 산정
 - 1인당 면적을 평창군 해당인구에 적용
 - 각 시설별 규모 산정

○ 시설의 배치

- 지하 1층 : 주차장 및 기계실, 시청각실
- 지상 1층 : 종합사회복지관
- 지상 2층 : 종합사회복지관
- 지상 3층 : 여성회관
- 지상 4층 : 여성회관 및 청소년문화의집

○ 사업비 산정 : 7,168백만원

- 공사비 : 6,187백만원(건축,기계,토목,전기,조경 등)
- 설계비 : 263백만원(기본및실시설계)
- 감리비 : 66백만원
- 예비비 : 652백만원

○ 운영 및 관리방안

- 개별시설 운영자들 간에 시설활용 등의 협조체계 강화
- 민간위탁을 통한 관리의 효율화 방안 강구
- 민간위탁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
- ⇒ 문화복지시설의 관리는 기본적으로 3개시설을 종합하여 민간위탁에 의한 관리가 바람직.

□ 세부 추진계획

○ 지방재정 투·융자사업 심사 : '06. 5월

- 심사기관 : 강원도
- 근거 :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, 제4항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
·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은 강원도 심사대상임.

○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: '06. 11월

- 근거 : 지방재정법 제77조
- 내용 : 평창읍 하리 113-1번지내 자원봉사센터 건물 철거 및
신축 관리계획

○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: '06. 11월

- 예산액 : 250,000천원
- 설계용역 기간중 관련 사회단체등과 간담회 수시 개최로 의견
최대한 반영
- 타 시·군 유사시설 견학하여 우수사례는 설계에 반영

○ 사업착공 : '07. 3월

□ 기타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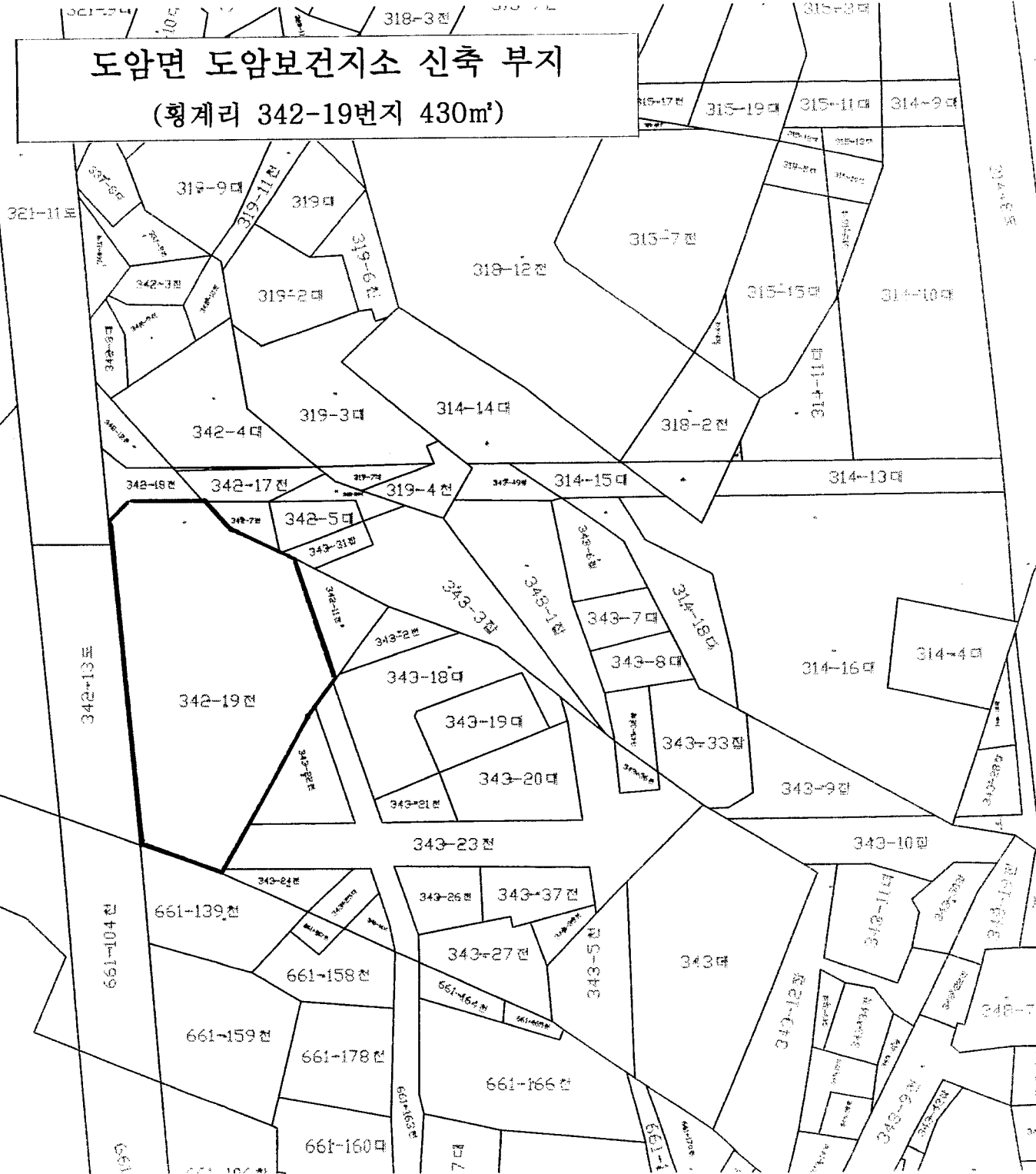
- 사업의 적기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노력 강구(국·도비)
- 주민설명회 개최
 - 여성단체, 장애인단체, 자원봉사단체 등과 수시 설명회 및 간담
회 개최

도암면 도암보건지소 신축 부지

(횡계리 342-19번지 430m²)

도암중학교

감자축제장



토지대장열람조서

<도암보건지소 신축 부지>

재산의 표시				소유자		비고
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m ²)	성명	주소	
소 계	1필		430			
횡계리	342-19	전	430	평창군	평창읍 하리 210-2	

위와 같이 토지대장을 열람한 바,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.

2006. 10. 30.

재무과 지방지적주사 김택용 (인)



도암보건지소 신축 계획

■ 개선 목적

본 지역은 인근지역에 관광리조트인 용평리조트가 있어 많은 관광객 및 인구의 증로 환자가 많이 찾아오고 있으나, 의원 1개소밖에 없으며,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보건지소가 전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. 도암면사무소 내 일부 공간을 (50평) 이용하고 있어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·진료사업과 확대 추세의 건강증진사업 등 새로운 보건의료 및 행정수요 추진이 곤란함.

2014년 동계올림픽 및 세계적 휴양·레포츠와 동계스포츠의 메카에 어울리는 보건의료시설로서의 위상 정립 및 응급진료체계가 필요한 시설개선이 요구되고 있음

- ▶ 노인수발실시 예정지역
- ▶ 독자적인 시설확보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위상 및 신뢰성 정립(현재 면사무소 건물내 보건지소 위치)
- ▶ 2014 동계 올림픽을 대비한 공공보건기관의 역할담당(응급의료기능 보장)
- ▶ 보건지소 본연의 업무수행(공간협소로 적극적인 진료와 보건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)
- ▶ 보건·진료사업과 확대 추세의 건강증진사업 등 새로운 보건의료 행정수요 추진이 곤란하고 주민 접근성에 애로사항이 있음
- ▶ 의과, 치과 및 한방과를 개설하고 의사숙소를 제공하여야 하나 공간이 없어 조기추진이 요구되고 있으며, 보건사업 공간확보, 주민 및 직원의 이 용편의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전신축이 필요한 곳임
- ▶ 시설공간과 부족공간을 확보하여 새로운 보건의료 행정수요를 충족하고, 양질의 서비스제공으로 군민 기대에 부응
 - ⇒ 외지기관 이용에 따른 시간 및 비용부담 해소
 - ⇒ 시설격차에 따른 불만해소
 - ⇒ 시설개선으로 오·백지 낙후지역이란 이미지 쇠퇴

■ 현 시설의 문제점

○ 기존시설이 낡고 협소하여

- 건강증진사업 등 새로운 보건의료 및 행정수요에 사업추진이 어렵고 주민이용에 애로사항이 많음.

- 세계적 휴양·레포츠와 동계스포츠의 메카에 어울리는 보건의료시설로서의 위상정립 및 응급진료체계가 필요한 시설개선이 요구되고 있음.

○ 의사숙소 확보 및 보건사업 공간 확보, 주민 및 직원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이전신축이 필요한 곳이다.

○ 인근지역에 관광리조트인 용평리조트가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나, 의원 1개소 밖에 없음.

○ 의약분업 제외지역으로 보건지소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건물의 노후 및 협소로 매년 시설보수가 필요한 상태며 공공의료기관의 시설로서 신뢰성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.

■ 시설개선 유형 및 내용

우선 순위	보건기관명	개선유형	개선내용	사업비		개선사유	건축년도	개선년도
				국비	도비			
1	도암보건지소	이전신축	1동 130평 (철근콘크리트)	334,013	83,504	○ 건물의 노후 및 공간협소 (면사무소내 위치)	1997	2007년
				191,198				

■ 시설 투자계획 총괄표

가. 소요예산

(단위 : 천원)

구분	계	국고보조금	지방비			
			필수 건축공사비	초과 건축공사비	설계,감리, 부대비	소계
시설개선	608,715	334,013	154,793	99,820	20,089	274,702
대지확보	600,000	-	-	-	-	-
계	1,208,715	334,013	154,793	99,820	20,089	274,702

나. 부지 확보 현황

시설개선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축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이전신축 <input type="checkbox"/> 증축 <input type="checkbox"/> 개보수	
부지확보현황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확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확보예정 <input type="checkbox"/> 물색중	
부지의 상태	기 확 보	확보예정
주 소		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일원(군유지)
면적 및 용도		200평(일반상업지역)
확보예정시기		2007. 6월중
확보방법		매입(관리전환)

■ 개선방향

이전신축 --- 공간협소 등은 이전·신축으로 문제해결 가능

■ 운영계획

가. 이전신축 시 기존시설 활용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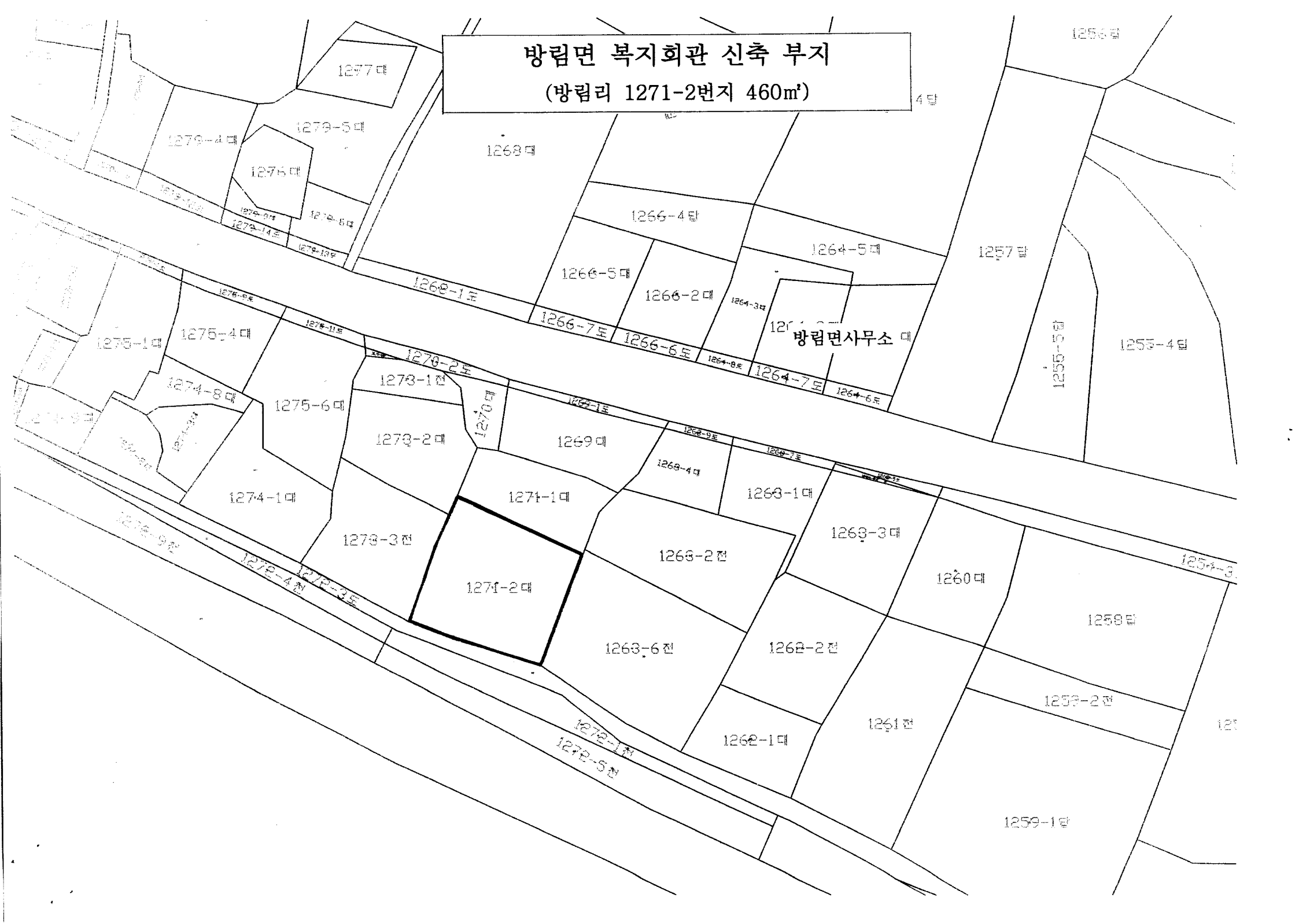
면사무소 시설 등으로 활용

나. 동일 대지내 신축기간 동안 현시설 기능의 유지운영 방안

■ 기대효과

- 노인수발보장제도 시범사업 실시
- 면단위에 의료시설(의원, 약국 등)이 부족한 의료취약점 해결-의원 1개소
- 공공의료기관으로 역할담당 및 주민 숙원사업 해결
- 근무직원의 업무능률 및 서비스질 증대
- 주민에 신뢰감 부여
- 보건지소 기본시설 확보 및 시설보수로 인한 예산 절감
- 시설공간과 부족공간을 확보하여 새로운 보건의료 행정수요를 충족하고, 양질의 서비스제공으로 군민 기대에 부응
- 외지기관 이용에 따른 시간 및 비용부담 해소
- 시설격차에 따른 불만해소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확보
- 시설개선으로 오·백지 낙후지역이란 이미지 쇄신

방림면 복지회관 신축 부지
(방림리 1271-2번지 460㎡)



토지대장열람조서

<방림복지회관 신축 부지>

재산의 표시				소유자		비고
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m ²)	성명	주소	
소 계	1필		460			
방림리	1271-2	대	460	평창군	평창읍 하리 210-2	

위와 같이 토지대장을 열람한 바,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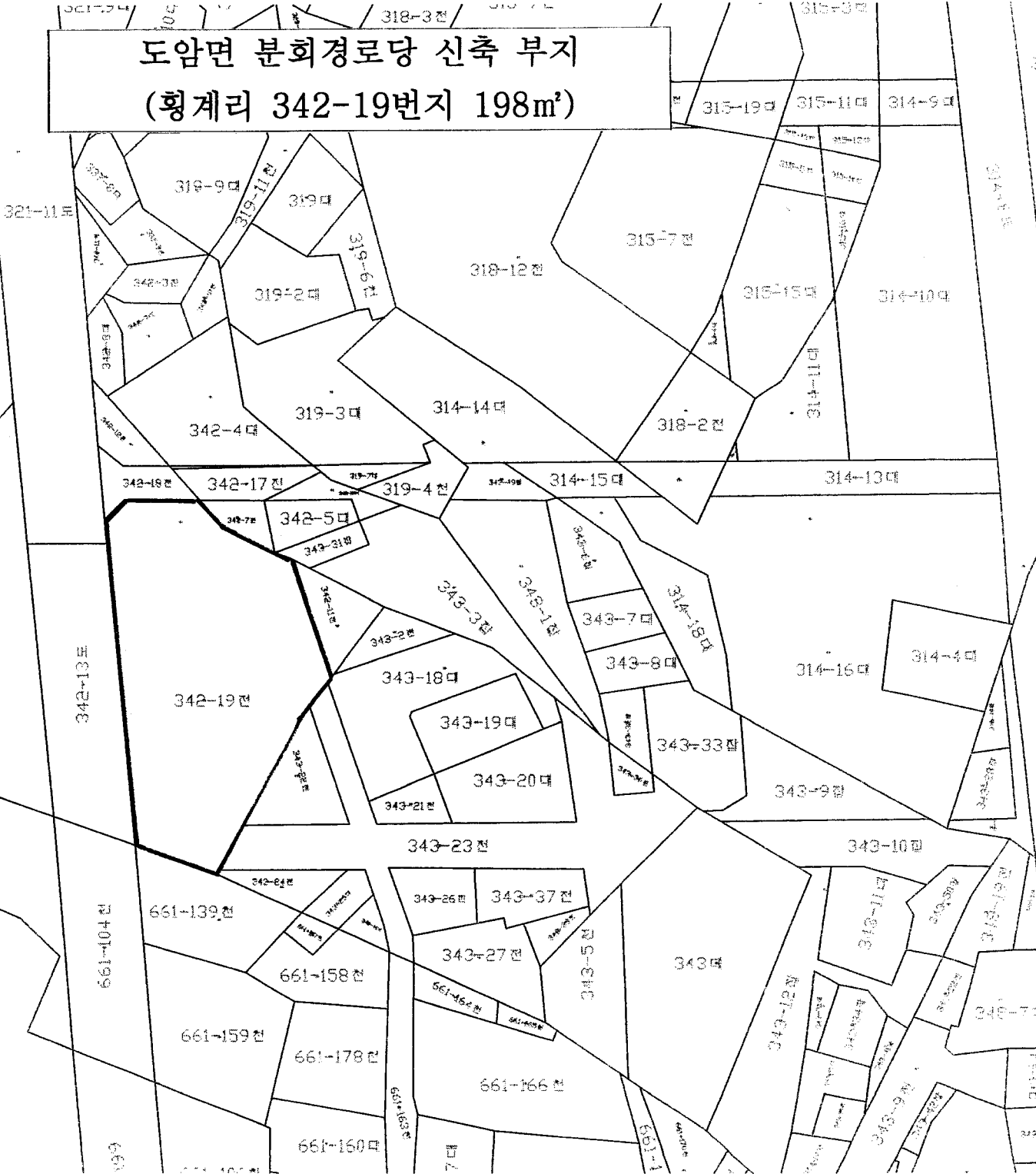
2006. 10. 30.

재무과 지방지적주사 김택용 (인)

도암면 분회경로당 신축 부지
(황계리 342-19번지 198m²)

도암중학교

감자축제장



도암1리

661-29

661-104

661-139

661-159

661-178

661-160

342-19

343-18

343-19

343-20

343-21

343-23

343-26

343-37

343-27

661-156

661-166

342-18

342-4

342-5

343-31

343-32

343-33

343-13

343-7

343-8

343-33

343-9

343-10

343-11

343-12

343-9

343-10

343-11

343-12

319-9

319-2

319-3

319-4

319-7

319-11

319-12

319-13

319-14

319-15

319-16

319-17

319-18

319-19

319-20

319-21

319-22

319-23

319-24

319-25

319-26

319-27

319-28

319-29

319-30

318-12

314-14

314-15

314-16

314-17

314-18

314-19

314-20

314-21

314-22

314-23

314-24

314-25

314-26

314-27

314-28

314-29

314-30

315-7

315-15

318-2

314-13

314-16

314-4

343-9

343-10

343-11

343-12

343-13

343-14

343-15

343-16

343-17

343-18

343-19

343-20

321-11

327-6

342-3

342-9

342-10

342-13

661-104

661-109

315-19

315-11

314-9

315-10

315-11

315-12

315-13

315-14

315-15

315-16

315-17

315-18

315-19

315-20

315-21

315-22

315-23

315-24

315-25

315-26

315-27

315-28

315-29

315-30

315-31

315-32

315-33

315-34

315-35

315-36

315-37

315-38

315-39

314-10

314-11

314-12

314-13

314-14

314-15

314-16

314-17

314-18

314-19

314-20

314-21

314-22

314-23

314-1

314-2

314-3

314-4

314-5

314-6

314-7

314-8

토지대장열람조서

<분회경로당 신축 부지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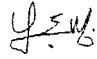
재산의 표시				소유자		비고
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m ²)	성명	주소	
소 계	2필		396			
횡계리	342-19	전	198	평창군	평창읍 하리 210-2	
하진부리	252	전	198	평창군		

위와 같이 토지대장을 열람한 바,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.

2006. 10. 30.

재무과 지방지적주사 김택용 (인)

등록번호	환경복지과-273 65
등록일자	
결재일자	
공개구분	공개

사회보훈담당	환경복지과장	부군수	군수	
			10/31	
이 시 클 지 해 기 노 차 권 리 승				
협조자	예산담당 			

2007년도 경로당(읍면 분회, 마을) 신축계획

평 창 군
(환경복지과)

2007년도 경로당(읍면 분회, 마을) 신축계획

- 우리군은 노인인구가 군 전체인구의 15.9%로 타 시·군에 비해 고령화 비율이 높은 실정으로 노인복지정책(예산)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.
- 그러나, 늘어나는 노인복지수요에 비해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복지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
 - 특히, 기존의 노인여가시설은 노후·협소하여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연차별 계획에 의거 분회 및 마을 경로당을 신축·보수하고자 함.

□ 추진방침

○ 읍·면 분회경로당 신축

- 연차별계획(2005. 9월 수립)에 의거 2007년 대상지역 건립(1개소)

○ 마을 경로당 신축

- 2006년까지는 1읍·면 1개마을 추진하였으나,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군 재정상 읍·면 보급율 등을 감안 시급한 마을을 우선적으로 건립(5개소)

○ 노후 경로당 보수

- 2006년 수준으로 일괄 편성하여 수요 발생시 추진

□ 세부추진계획

【분회경로당】

- 대상지 : 도암면 분회
- 사업비 : 500,000천원(건물 100평)

○ 신축부지 : 도암면 황계리 342-19번지(군유지)

- (주)풍림개발 소유 토지와 군유림과의 교환부지(도암중학교 앞)

※ 당초 2007년 건축대상 분회 경로당은

- 진부면과 도암면 2개소이나, 진부면 분회경로당은 특별교부세 500,000천원이 확보되어 2006년 제3회 추경에 반영 추진

【마을 경로당】

○ 대상지 : 5개소

- 읍·면 신청은 9개 마을이나, 시급한 5개 마을만 신축

○ 사업비 : 750,000천원(1동당 150,000천원)

○ 신축대상지 현황

읍·면별	위 치	면적	비 고
평창읍	노론리 380-2	99	- 기존 경로당 無 - 신축부지 기 확보(평창향교) - 분노처리장 주변지역지원사업 으로 추진
대화면	상안미4리 178-8	99	- 1980년 건물로 노후 - 신축부지 기 확보(마을영농회)
봉평면	창동4리 524-6	99	- 기존 경로당 無 - 신축부지 기 확보 (영농조합법인)
진부면	동산리 26	99	- 기존 경로당 無 - 신축부지 기 확보(월정사)
도암면	용산2리 산 153	99	- 1970년 건물로 노후, 수해로 인해 반파 상태 - 신축부지는 군유지

(신축제외 대상)

읍·면별	위 치	면적	비 고
평창읍	하2리 411-1	99	- 기존건물 협소하고 노후되었으나 2008년 신축 추진
미탄면	울치리 317-2	99	- 기존 건물 협소하고 노후되었으나 매립장 완공후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으로 신축 가능
방림면	방림4리 279-9	99	- 수해로 인해 기초바닥 쇠굴되었으나 보수완료된 상태로, 사용에는 문제없음
용평면	이목정1리 363-13	99	- 기존건물 1998년 신축하였으나 지붕누수 등 하자발생 - 2007년 보수사업비로 추진

【노후경로당 보수】

○ 사업비 : 200,000천원

○ 대 상 : 보수사업비 일괄 편성후 개·보수사업 발생시 추진

□ 기타사항

○ 신축건물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: 재무과 협의

○ 2007년 신축에서 제외된 대상지역은 2008년 신축계획 수립시 최우선 반영

관 계 법 령 발 체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,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(매입, 기부채납, 무상양수, 환지, 무상귀속, 교환, 건물의 신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1. 예정가격에 있어서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 취득 또는 처분 시 1건당 5억원 이상인 재산.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「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(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“개별공시지가”라 한다)로 하고,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「지방세법」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 다만, 건물의 신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.

2. 토지에 있어서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 취득은 1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, 처
분은 1건당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